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 4. 18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1998. 4. 22.

다. 상 정 일 자 : 제65회 사하구 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98.5.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황인호 민원봉사과장)

가.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98. 1.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94. 3. 2일 국무총리 훈령 제 288호에 의거 행정정보 공개 운영 지침으로 제정된 현행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금회 폐지하고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현행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위원구성은 훈령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동법시행령 제18조 비용 부담의 수수료는 동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 규정을 삽입 운영하게 함으로써 조례폐지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